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08호 2015. 11. 11.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49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961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거창군 공고 제2015-962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

거창군 공고 제2015-963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0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34

거창군 공고 제2015-965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3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35

거창군 공고 제2015-96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36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357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88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357	2009-04-01	2015-11-10	동변길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4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4길 25	2009-04-01	2015-11-10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34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웅길 20-99	2009-04-01	2015-11-10	거창군 고제면과 거창군 웅양면을 잇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268-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593-165	2009-12-28	2015-11-10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330-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186	2009-12-28	2015-11-10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26-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조금실길 505	2009-04-01	2015-11-10	조금실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600-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감약길 447-177	2009-04-01	2015-11-10	감약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63-2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67-20	2009-04-01	2015-11-10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7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134-13	2009-04-01	2015-11-10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31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226-17	2009-12-28	2015-11-10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 도로명주소 변경

일련 번호	종전주소	변경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13-1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13-15	2009-04-01	2015-11-10	도로명주소 변경(분리)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13-1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5일

거 창 군 수

1. 자치 법규명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승강기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
- 우편번호 : 우 50132 / 전화: 055-940-337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pssil68@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사 진
시장 [점장부 포옥지] 사용허가증	
주 소 도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u>생년월일</u>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한 공설시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조건부 허가함.	
년 월 일	
1. 사용 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2. 장소 및 면적	동 호 평(m ²)
3. 업 종	
4. 부 대 조 건	
가. 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 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치 못한다.	
나. 사용료는 시장사용 당일에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에 의한 경우는 예외)	
다. 점포 내부 개축 또는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거 창 군 수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05.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5-
----------	-------

제출연월일	2015. 11.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안제20조의2)
-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안 제28조)
-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한시적 건폐율 완화(안 제53조 제4항)
-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 2)
-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 3)
- 아.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 4)
-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 5)
-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 6)
-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1조의 2)
-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안 제61조의 3)
-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안 제65조의 2)
-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안 제73조, 안 제7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5 ~ '15. 11. 25 (20일간)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문”을 “심의”로,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 ③ 영 제56조의3 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3호 중 “준용하며”를 “준용한다”로 하고, “도로 가시권의 용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 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제1항 제19호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둔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2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56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함(단,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제 56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4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 56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5 (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 6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 규정에 따라”로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8조 제1항 제19호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둔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 제3항 중 “하천”을 “재해·재난”으로 한다

제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 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 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와 제62조 사이에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문구를 삽입하며 제2절(군계획상임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및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114조 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15부터 별표19까지, 별표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u>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3. ~ 4. (생략)</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심 의</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3.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p> <p>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p> <p>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p> <p style="padding-left: 20px;">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교통처리계획</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생략)</p> <p>1. ~ 2. (생략)</p> <p>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u>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4. ~ 6. (생략)</p> <p>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생략)</p> <p>1. <u>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u></p> <p>2. <u>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u></p> <p>3. <u>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u></p>	<p>2. 주민편의시설계획</p> <p>③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준용한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p> <p>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p>
---	---

호를 적용한다.

<신 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 21. (생략)

<신 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조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
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제53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
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
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
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
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
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31일까
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
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
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

<p><신 설></p>	<p>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p><신 설></p>	<p>제56조의2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p> <p>영 제84조제5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신 설></p>	<p>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p> <p>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함(단,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p>
<p><신 설></p>	<p>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p>

<신 설>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 설>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9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p>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21. (생략)</p> <p><신 설></p>	<p><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 60퍼센트 -----</p> <p>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18. (현행과 같음) 19. -----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u> 20.~ 21. (현행과 같음)</p> <p>제61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u>영 제8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p>
---	---

<신 설>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3(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하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3조(구성)

<p><신 설></p>	<p>①~② (생략) ③----- -----재해·재난----- -----</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62조(기능)</p>	<p>제65조의 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u>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u> <u>②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p>
<p><신 설></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2조(기능)</p> <p>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u>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u> <u>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0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97호(2015.07.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05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5. 11. 0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9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상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조면 마상리 494-6번지 일원	소로	3	105	314.5	6	1,895	경고 제115호 (1975.05.24)	2013.07 ~2015.12.31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3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06호(2015.08.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3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5. 11. 0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중마2구(상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조면 마상리 183-15번지 일원	소로	2	193	301	8	2,722	경고 제115호 (1975.05.24)	2013.04 ~2015.12.31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5-96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 11. 05.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 지구명 : 오계지구
3.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산122-1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48,198㎡
신청면적 4,915㎡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19,500천원(부지조성 500천원, 기타 19,0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11 ~ 2016. 11.(12개월)
8. 이의신청기간 : 2015. 11. 05 ~ 2015. 12. 05(30일간)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